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유산수리 현장배치 확인시점, 신부재 미표시 과태료 부과 등 법령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용에 혼란이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, 국가유산수리업등 기술능력 충원기한을 완화하여 수리업등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8. 00. ~ 2025. 9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5항 중 “배치할 때”를 “배치할 때(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후 재개될 때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별표 7 비고 제1호 나목 중 “1개월”을 “2개월”로 한다.

별표 12 다목 위반행위란 다목 중 “법 제14조제3항”을 “법 제14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자목을 차목으로, 차목을 카목으로, 카목을 타목으로, 타목을 파목으로 하며,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. 법 제3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새로운 부재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	50
--	----------------	--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유산수리업등 기술능력 충원에 관한 적용례)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술능력 충원 기한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 장 배치기준 등) ① ~ ④ (생 략)	제18조(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 장 배치기준 등) ① ~ ④ (현행 과 같음)
⑤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법 제33 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<u>배치할 때에는</u> 그 국가유산수리 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	⑤ ----- ----- ----- <u>배치할 때(국가유산수리가 일시 적으로 중지된 후 재개될 때를 포함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
⑥ · ⑦ (생 략)	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966